

# 송도국제도시 M2블록 호반써밋 송도 공동주택

##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 청약 시 유의 사항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옵션에 따라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공 완료된 발코니 확장 및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취소 불가).
- 본 아파트는 최초 분양 완료 후 견본주택 운영 및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지로써, 당첨자에 한해 해당 세대를 개방할 예정이므로 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2023.05월 입주 종료되어 입주 시까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 하셔야 하며, 대출기관 알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입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등을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20.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3.28. 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주변 여건 등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민간택지(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0.)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취소후재공급	O	O	X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0.)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7조의 3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취소 후 재공급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닌,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최초 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당첨자 발표일)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해당세대 개방	계약체결
일 정	11월 30일(목)	12월 06일(수)	12월 08일(금) ~ 12월 09일(토)	12월 08일(금)	12월 13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입주지원센터 (시흥시 배곧동 아브뉴프랑 센트럴 레드동 312호) *변경 시 별도안내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므로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등 사전에 준비하시어 청약신청 당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창구, 입주지원센터 접수 불가)  
단,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지참하여 입주지원센터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20835호(2023.11.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2-1,4번지(송도국제도시 8공구 M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9층 7개동 총 1,820세대 중 일반분양 계약취소주택 1세대

■ 최초입주시기 : 2023년 02월 / 금회입주시기 : 잔금 납입 완료 후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m<sup>2</sup>)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주택	2023930038	01	084.7005A	84A	84.7005	32.3015	117.0020	42.2562	159.2582	23.8346	1	1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2024.01.12.
084.7005A	109	3003	193,665,000	300,535,000	494,200,000	49,420,000	444,78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 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최초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한 사항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 알선 등은 없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지정한 일자에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금액 및 확장시 제공 품목 현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2024.01.12.	
084.7005A	109	3003	12,000,000	1,200,000	10,800,000	- 가변형 벽체 확장안함(각실 별도사용) -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기본형(도어+내부시스템선반)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및 옵션에 따라 자재의 주문·제작 및 공사가 진행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아파트,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및 발코니확장 대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12-488565	한국자산신탁(주) 김규철

- 당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9동 30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93003홍길동'으로 기재)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수영장, 작은도서관 외), 스카이라운지, 맘스스테이션, 지하주차장 등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별도 순위 없음)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3.11.20.)”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2023.11.30(목)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구분	선정 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자가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

##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3.12.06.(수)</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12.13(수)(10:00~16:00)</li> </ul> </li> <li>•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흥시 배곧동 아브뉴프랑 센트럴 레드동 312호 입주지원센터</li> </ul> </li> </ul>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를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이용기간	2023.12.06 (수) ~ 2023.12.15 (금)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li>※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ul>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12.06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일반공급	○		①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li> </ul>
	○		②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용에 한함</li> <li>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 3자 대리신청 불가</li> </ul>
	○		③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li> <li>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li> </ul>
	○		④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발급</li> </ul>
		○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본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li> </ul>
	○		⑤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정보 표시하여 발급</li> </ul>
	○		⑥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li> </ul>
	○		⑦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1. 20)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⑧ 추가 개별통지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li> </ul>	
대리인 제출 시 추가서류	○		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발급용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계약은 불가)</li> </ul>
	○		②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li> </ul>
	○		③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li> </ul>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			
당첨자 본인 계약시	○		①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li> </ul>
	○		②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li> </ul>
		○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li> <li>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 3자 대리신청 불가</li> </ul>
	○		④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li> <li>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li> </ul>
	○		⑤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수입인지 구입후 계약시 첨부 사이트(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li> <li>- 수입인지사이트 (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구입 가능</li> </ul>
		○	⑥ 추가 개별통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li> </ul>
대리인 계약시	○		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발급용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계약은 불가)</li> </ul>

추가서류 (본인 외 모두)	○		및 인감도장		
제3자)	○		②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③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3.11.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인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 (「1억초과 10억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납부 및 전자수입 인지를 구입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추후 등기시 소인처리 하여야 합니다. 본 분양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V 기타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인천 송도동 312-1, 4번지(송도 8공구 M2BL)주상복합 신축공사  
 2. 신청자 : ㈜인원전송도엠투피에프이, ㈜로만건설  
 3. 내지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지구 6,8공구 M2BL 일원  
 4. 성능 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결방음역치 차단성능	★★★	20. 열개폐 녹지 조성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21. 자연채 녹지율	★
3. 세대 간 방적벽의 차음성능	★★★★	22. 생태민첩율	★
4. 고품질(도료, 절토)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3. 비오물 조성	★★★
5. 화상성 급락수 소음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차기주자랑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대뉴얼 제공	★★★★
7. 사용자 메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복지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복지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열소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면 콘셉트	★

라.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설비	★
4. 수평미닫기	★
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브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2월 13일

한국감정원

#### ■ 녹색건축 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호반씨잇 송도  
 건축주 : (주)인원전송도엠투피에프이  
 준공(예정)일 : 2023.01.31.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0  
 층수 : 지하4층, 지상49층  
 연면적 : 454,649.8956㎡ (평가연면적: 454,649.8956㎡)  
 건축물용도 : 복합(공동주택+업무건축물)  
 설계자 :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자 : (주)호반건설

**인증 개요**

인증번호 : G-SEED-C-2022-0864-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2.12.29. ~ 2027.12.28.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2년 12월 29일

한국부동산원장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20>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호반씨잇송도(주거)	인증번호 : 22-주-분-11-0219	평가자 : 최선우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준공연도 : 2023.02.07	주 소 : 인천 연수구 송도동 312-4	분명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32-12-07 까지
층 수 : 지하4층 / 지상49층	연면적 : 454649.8956㎡	건축물의 주인 용도 : 공동주택	공사시공자 : ㈜호반건설
설 계 자 :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자 : (주)호반이엔씨	<b>인증 등급</b>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3배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최소배양 건축실적	63.7	82.81	1+	48	19.4
에너지최대배양 건축실적				72	

구분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1.7	29.4	23.0	5.1
급탕	30.7	40.5	30.0	6.7
조명	11.3	11.0	30.2	5.2
환기		5.2	14.3	2.4
합계	63.7	86.1	97.5	19.4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쓰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 않은]건축물입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 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한국부동산원장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지하주차장출입구의 높이 및 지하주차장 차로의 층고, 천정고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차량 진입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 105동 사이의 지상에서 지하2층으로 가는 경사로의 출입구 높이는 3.1m로 설치됨
- 104, 105동 사이의 지하3층에서 지하4층으로 가는 경사로의 높이는 2.7m로 설치됨
- 103, 108동 사이의 지하2층에서 지하3층으로 가는 경사로의 높이는 2.7m로 설치됨
- 지하주차장 지하2층 차로의 층고는 4.7m이고 천정고는 2.7m로 설치됨
- 지하주차장 지하4층 차로의 층고는 3.7m이고 천정고는 2.3m로 설치됨
- 104, 105동 사이의 지하2층에서 지하3층으로 가는 경사로의 높이는 2.7m로 설치됨
- 103, 108동 사이의 지상에서 지하2층으로 가는 경사로의 출입구 높이는 2.7m로 설치됨
- 103, 108동 사이의 지하3층에서 지하4층으로 가는 경사로의 높이는 2.7m로 설치됨
- 지하주차장 지하3층 차로의 층고는 3.6m이고 천정고는 2.3m로 설치됨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동우이앤씨 / (주)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주)경민엔지니어링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6,254,600,000	1,806,196,086	819,000,000	171,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주)인천송도엠투피에프비이	200111-0496054
시공회사	(주)호반건설	204711-0007384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vertium.hobanapt.co.kr/hobansummit-sd/>

■ 분양문의 : 070-7461-8260

※ 청약하시기 전에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여러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지원센터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